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

의안번호 35

제출연월일: 2018. 09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임.

2. 주요내용

○ 대상자 : 총 2명

-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이선주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기홍

○ 공적요약

연번	대상자	공적내용
1	, , ,	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 바람마을을 KT의 사회 공헌사업인 기가스토리 7번째 지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마을발전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, 2018년 6월 횡계6리 수해 발생시 구호키트 제공 및 밥치를 운영하여 지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

성명: 김기홍 (59세, 남) 직위: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 사무처장 의원회 사무처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로 평창군의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,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복합문화관광 메카로 육성, 세계 관광지도에 평창과 강원도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 1부.

○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 군민증서(이하 "명예군민증" 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○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

제2조(수여대상자 요건)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(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)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.

- 1. 문화예술,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
- 2.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
- 3.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

- 4.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
- 5.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

제5조(명예군민에 대한 특전)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중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- 1. <삭제 2011.7.15>
- 2.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및 사유시설의 지역주민과 동일한 대우
- 3.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 초청
- 4.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
- 5.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 등